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
------	-----

2018. 11.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8. 11. 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 제안이유

-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중점 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239명에서 18,422명으로 183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안전·복지·균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100명)

- (1)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스마트시티 구축,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청 신설 등 미래 분야 증원(+21명)
- (2) 대기질 관리체계 정비 및 연구역량 강화, 지하철 안전성·공공성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 분야 증원(+16명)
- (3) 틈새 없는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 주거취약 계층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 분야 증원(+22명)
- (4) 강남북 균형발전, 교통 불균형 해소,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케이팝 활성화 등 균형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 증원(+18명)
- (5)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신설,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 신설, 갈등조정 강화, 인권 교육·영향평가 본격 시행 등 기타 분야 증원(+23명)

나. 주요기능 강화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원(+33명)

- (1) 시민숙의예산제 운영, 조직문화 개선, 채용시험 관리, 박물관 분관 체계적 운영 등 인력 보강(+17명)
- (2) 전략적 자산취득 강화,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가족돌봄자지원센터 설치 등 기능 보강(+16명)

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소방 인력 및 시립대 교원 증원(+32명)

라.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및 입법지원 전문 인력 증원(+18명)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239명에서 18,422명으로 183명 증원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스마트시티 구축, 청년청 신설 21명, ▷ 대기질 관리체계 정비, 지하철 안전성강화 등 안전 분야 증원 16명, ▷ 지역돌봄 서비스 확대와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 주거취약계층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 분야 22명, ▷ 지역균형발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18명, ▷ 영동대로복합개발 및 온라인민주주의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갈등조정 등 23명, ▷ 시민숙의, 조직문화 개선, 전략적 자산취득 강화 등 33명, ▷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시립대 교원 증원 32명, ▷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18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임.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총 계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소방	교원
		소계	1~3급	3~4급	4급	4~5급	5급 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4급 상당	5급 상당 이하		
현 행	18,239	10,304	48	5	235	10	10,006	372	60	312	37	5	32	7,002	498
변 경	18,422 (+183)	10,451 (+147)	48	5	242 (+7)	10	10,146 (+140)	376 (+4)	62 (+2)	314 (+2)	37	5	32	7,027 (+25)	505 (+7)

※ 총계에는 정무직(2), 지도직(24)이 포함됨.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전	18,239	10,278	310	7,002	498	151
개정 후	18,422	10,405	328	7,027	505	157
증 감	183	+127	+18	+25	+7	+6
사 유		여성가족정책실(+4) 기획조정실(+3) 경제정책실(+10) 청년청(+8) 복지정책실(+7) 주택건축본부(+11) 도시교통실(+10) 도시계획국(+4) 기후환경본부(+10) 서울혁신기획관(+12) 도시기반본부(+7) 등	의회사무처(+6) 전문위원실(+12)			

※ 기획조정실장(국가직) 별도

나. 인력증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서울시는 민선 7기 주요 시정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인력 183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
- 우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할 경제정책실내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신설과 지역간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경제과’ 신설에 따라 10명을 보강하고, 스마트 도시 추진체계의 기능강화와 ‘청년청’ 신설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3명과 8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임.
-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이 11.3%에 달하고,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확장

실업률이 23%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¹⁾.

- 최근의 국내경기 침체와 실업문제는 산술적인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미래 혁신성장산업의 부재와 관련 인재양성의 부족 등과 같은 산업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우수한 연구역량과 인력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강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캠퍼스타운 활성화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음.
- 교육, 연구, 인재의 중심인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으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학과 지역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발히 협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청년이 당면한 문제와 미래 의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8명)할 계획임.
-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서 고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청 조직이 분산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1) 통계청 8월 고용 동향

서는 업무의 영역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기질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인력 16명(기후환경본부 10, 보건환경연구원 6)의 증원을 요청하였음.
 - 과거 특정한 시기에만 부각되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 문제가 연중 수시로 발생하여 시민의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²⁾.
 -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관련부서의 신설과 인력증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틈새 없는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안전망 구축과 젠더폭력 예방 전담기구 신설 등 복지분야 22명(복지정책실 4, 주택건축본부 11, 여성가족정책실 4, 노동민생정책관 3)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였음.
 - 이들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을 통해 빈틈없는 지역돌봄서비스 체계와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열악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젠더폭력의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가 39.2%에 불과하고(쿠키뉴스, 2018. 11. 14), 차량 2부제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운영 등을 골자로 올 초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도 43.5%가 반대의사를 표함(뉴시스, 2018. 1. 22).

- 그러나,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정원 조정을 통해 젠더폭력예방 인력 1명을 증원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4명의 증원을 요청하는 것은 계획적인 인력 배치와 운용에 실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신설되는 ‘도시철도과’(6명), ‘문화협력팀’(1명), ‘공연예술팀’(2명), ‘여가관광팀’(1명), ‘영동대로복합개발 추진단’(7명)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18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였음.
- 새로운 행정수요와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능의 소멸·쇠퇴 분야에 대한 인력 조정 없는 공공조직의 비대화는 반발이 큰 만큼, 서울시가 수행하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직무분석과 진단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급증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와 관련 업무 확대에 따라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입법지원 인력(12명)과 의정활동 지원인력(6명)의 증원 요청사항이 반영되었음.

다. 소방공무원 증원

- 서울시는 잇따른 각종 사고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요구에 부응하고자 시설물 안전점검과 소방직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에 필요한 소방인력 25명을 보강할 계획임.

- 현재 서울시에는 안전 점검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물이 209,602개 존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 관내 소방시설물 안전 점검 대상 내역〉

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209,602	261	3,733	27,628	20,468	157,512

- 이들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불성실하거나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소방인력의 한계³⁾ 등에 따라 대상 시설물의 약 12%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3년간 소방시설물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구 분	총 대상물 수	연중 점검결과	
		총 점검 수	점검비율
2017년	209,602	26,679	12.7%
2016년	196,100	26,848	12.8%
2015년	150,955	24,278	11.6%

- 이에 서울시는 화재예방과 대상물 점검 등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 가운데 지난 6월에 23명을 증원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4명의 소방특별조사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

3) 현재 서울시에는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 담당자와 24개 소방서에 배치된 예방인력을 포함해 모두 223명의 특별조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과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수시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와 소방점검 대상 시설물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당 인력의 증원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이번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관내 점검대상 소방시설물의 약 80% 정도는 여전히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소방시설물의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물주가 선정·의뢰해 민간업체가 실시하는 현행 자체점검 방식에서 소방서가 직접 점검하는 방식과 혼합하거나, 소방서가 점검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현업부서 3교대 실시와 소방서 신설, 오토바이 구급대원 신설 등의 목적으로 모두 501명의 소방인력을 꾸준히 증원해 왔음.

〈최근 5년간 소방인력 증원 내역〉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명)	173	146	45	86	51
사유	-3교대 157명 -쌍문안전센터 신설 16명	-구급요원93명 -소방예방 인력 53명	-신규사업 및 현장인력 45명	-성동서신설 56명 -오토바이구급 대원 30명	-세곡안전센터 신설 28명 -소방특별조사 인력 23명

- 또,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2018~2022)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부족한 현장대응 부족 인력 695명을 포함해 948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임⁴⁾.

〈서울시 소방인력 보강 계획〉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948명)		128	273	224	182	141
현장대응 부족인력(695명)		94	177	156	151	117
관서신설 인력(199명)		28	96	56	19	-
기타 (54명)	소방학교 교관보강(6명)	6	-	-	-	-
	안전보건 전담인력(48명)	-	-	12	12	24

- 이 밖에 소방감사담당관에 관련 인력 1명의 증원을 통해 소방직 재산 등록 및 취업심사 업무이관에 대응할 예정임.

라. 인건비의 증감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183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151억 4천 3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 다만, 이번 정원조례 개정 이후 공포와 채용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까지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임.

4) 서울시(2018.4)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기본계획」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 산정내역〉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15,143백만원	○ 일반직(+147명) : +12,720백만원 ▷ 4급(+7) : 107백만원 × 7명 = 749백만원 ▷ 5급(+29) : 102백만원 × 29명 = 2,958백만원 ▷ 6급(+70) : 86백만원 × 70명 = 6,020백만원 ▷ 7급(+41) : 73백만원 × 41명 = 2,993백만원 ○ 연구직(+4) : +346백만원 - 연구관(+2) : 99백만원 × 2명 = 198백만원 - 연구사(+2) : 74백만원 × 2명 = 148백만원 ○ 소방직(+25) : +1,755백만원 - 소방위(+3) : 96백만원 × 3명 = 288백만원 - 소방장(+7) : 84백만원 × 7명 = 588백만원 - 소방교(+6) : 67백만원 × 6명 = 402백만원 - 소방사(+9) : 53백만원 × 9명 = 477백만원 ○ 교원(+7) : +322백만원 - 조교(+7) : 46백만원 × 7명 = 322백만원	'18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행정안전부의 2018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323억원(기준인력 20,205명)으로, 이 중 서울시는 당초 1조 6,867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했음.
- 이후 1월(373명)과 6월(23명), 8월(72명) 등 모두 세 차례 정원을 확대 하면서 약 316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연초 예상보다 초과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기간 인건비 여유 규모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됨.
- 연내에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채용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서울시의 인건비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임.

라. 장기적인 인력·정원관리 필요성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제23조5)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올해 수립된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85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2019년에는 전체 정원을 18,385명의 범위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감 내역〉

구 분	계	순증(a-b)	증원(a)	감원(b)
합 계		580	850	△270
2018년	18,239	-	-	-
2019년	18,385	146	369	△223
2020년	18,534	149	159	△10
2021년	18,662	128	144	△16
2022년	18,756	94	96	△2
2023년	18,819	63	82	△19

- 이번 정원 개정사항을 통해 충원되는 인력이 실제 2019년부터 정원에 반영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당초 계획했던 2019년 인력계획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5)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등을 중·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임.

- 따라서, 매년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수립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다소 과도한 수준의 인력 증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에서 신중히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임.

마. 종합의견

-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 주요 핵심과제의 성과 조기 창출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83명 증원을 요청하였음.
-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공조직의 특성상 인력증원이 곧바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점과 고용탄력성이 낮은 문제 등 향후 조직관리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지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과정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다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큼.
- 또한, 순환보직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습득된 후에 전혀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업무 노하우가 조직 내에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력 운용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2018년에만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시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시행일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7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4
----------	--------

제안년월일 : 2018년 11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시행일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7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함(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19년 1월 17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239명”을 “18,4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278명”을 “10,4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7,002명”을 “7,0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498명”을 “5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310명”을 “3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51명”을 “157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8,239”을 “18,422”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10,304”를 “10,451”로 하며,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42	147	16	8	67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909”을 “10,049”으로 하고,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72”을 “376”로 하며,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62	5		34	23	
-----	----	---	--	----	----	--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312”를 “31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7,002”을 “7,027”로 하며,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967”을

“6,992”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498”을 “505”로 하며, 조교의 계란 중 “62”를 “69”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239 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278명</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7,002명</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98명</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0명</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51명</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18,422명 -----.</p> <p>1. ----- -----</p> <p>10,405명</p> <p>2. ----- -----7,027명</p> <p>3. ----- -----505명</p> <p>4. -----328명</p> <p>5. -----157명</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small;">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8,23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0,3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8</td> <td>8</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35</td> <td>142</td> <td>16</td> <td>7</td> <td>66</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239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304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35	142	16	7	66	4	4·5급	10	1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small;">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8,4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0,45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8</td> <td>8</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42</td> <td>147</td> <td>16</td> <td>8</td> <td>67</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42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51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239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304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35	142	16	7	66	4																																																																																																																																							
4·5급	10	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42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51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5급이하 소계	9,909							5급이하 소계	10,049						
전문경력관 소계	97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 계	37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372							연구직 계	376						
연구관	60	5		32	23		연구관	62	5		34	23			
연구사	312							연구사	314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7,002							소방공무원 계	7,027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967							소방령 이하 계	6,992						
교육공무원 계	498							교육공무원 계	505						
총 장	1							총 장	1						
교수 등	435							교수 등	435						
조 교	62							조 교	69						